

i-vector Innovationsmanagement GmbH

Rohrdamm 88

13629 Berlin

**“ReLioS” 등록협회  
(„ReLioS” e. V. Senftenberg)**

**정관**

2023년 6월 28일

베를린에서 작성

**목차**

전문.....	- 1 -
§ 1 협회명, 소재지, 회계연도.....	- 2 -
§ 2 협회의 목적.....	- 2 -
§ 3 회원 가입.....	- 4 -
§ 4 회비, 정보보호.....	- 5 -
§ 5 탈퇴 및 제명.....	- 6 -
§ 6 협회의 조직기관.....	- 7 -
§ 7 회원 총회.....	- 7 -
§ 8 임원회.....	- 9 -
§ 9 경영이사.....	- 10 -

§ 10 자문 및 기술전문위원회.....- 11 -

§ 11 협회회원과의 거래 및 서비스제공, 저작권, 비밀유지.....- 11 -

§ 12 협회 자산의 사용, 예산.....- 12 -

§ 13 결산, 회계감사.....- 12 -

§ 14 소재지 이전.....- 12 -

§ 15 협회의 해산.....- 12 -

§ 16 집행지와 재판관할권.....- 12 -

§ 17 부칙.....- 13 -

„Sustainable Batteries” e. V. 회원.....- 14 -

본 협회 정관은 실무용 한국어 번역본이며, 독일어 원본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참고 바람.

## 전문

협회는 자연인과 더불어 법적 행위 능력 가진 협회, 그 외 공법 및 민법상 법인, 한정된 법적 행위능력을 지닌 단체 특히 (독일민법 제 705 조 이하에 해당되는 GbR 인) 독일 사단법인, (독일 상법 제 105 조 이하에 해당되는 OHG 인) 합명회사, (독일민법 제 705 조 이하에 해당되는 GbR 인) 독일 사단법인, (독일 상법 제 161 조에 해당되는 KG=Kommanditgesellschaft 인) 합자회사 등을 회원으로 한다. 본 협회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또는 제 3 국 소재 해외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해외 회원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독일 법률 용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용어를 이하에서 정리한다:

### **등록 협회 (e. V.):**

협회라 함은, 공동의 취지 달성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모이는 인물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협회등기에 등록함으로써 협회는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협회재산으로 협회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협회회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 **독일 민법 제 181 조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

예외 규정에 따라 위임자는 본인 자신을 대상으로 또는 제 3 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인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 ReLioS 배터리“ 등록 협회**  
(  
**„ReLioS“ e. V. Senftenberg**  
)

**정관**

**참고**

(역자 주: 본 참고 부분은 독일어의 남성/여성명사 사용에 관한 것으로, 한국어 번역본에는 해당사항 없음)

**§ 1 협회명, 소재지, 회계연도**

- (1) 본 협회의 명칭은 “ ReLioS”라 하며, 독일어 원래 명칭은 “ ReLioS”이다. 독일 협회 등기에 등록 마친 후 e.V.(등록협회)라는 부분이 명칭에 추가된다.
- (2) 본 협회 소재지는 독일 쟌프텐베르크, 브란덴부르크 주 (Senftenberg, Brandenburg) 에 둔다.
- (3)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일반 역년(曆年)에 따른다. 첫 회계연도는 협회의 설립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 2 협회의 목적**

- (1) 본 협회는 학술 진흥, 연구개발 장려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배터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시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홍보 활동,
  - 타 조직(예: 표준화 기구, 정부 또는 환경단체)에 대하여 회원들을 대표
  - 학술행사 및 정보전달 행사를 주최,

- 회원 및 비회원 상담 (경우에 따라 유료),
- 결정권자 자문,
- 산업적 경쟁선행적 연구개발,
- 연구주제의 식별 및 조정,
- 협회 산업계 회원 및 협회 연구기관 회원들간의 협력강화,
-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재정지원 유치를 위해서 협회 기업회원들과 협회 기관회원들 지원,
- 혁신적 배터리 생태계 분야의 공동개발기획을 포함한 탁월한 프로젝트 공동체 및 역량 공동체 구축,

(2) 본 협회는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자본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유한 책임 주식의 매입에도 해당한다.

(3) 본 협회는 회원들 및 제 3 자에게 재화 및 용역 교환을 제공한다.

(4) 본 협회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 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일차적으로 추구하지 아니한다.

(5) 본 협회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높은 지출 또는 보수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표이사 및 총괄기획팀(coordination management) 이외의 모든 본 협회 직책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보수 금액은 임원회의가 정한다. 대표이사 또는 총괄기획팀에 속하는 회원인 동시에 임원일 경우, 해당 임원회원은 본인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표권이 없다. 본 협회의 재정은 협회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회원 개인비용은 임원회의 사전 결정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6) 본 협회의 용역/서비스를 받을 법적 권리는 없다.

### § 3 회원 가입

- (1) 본 협회의 회원은 자연인, 타 협회, 각종 형태의 기업, 법적 행위능력이 없는 단체(예: 대학기관, 연구기관 등) 및 학술적 또는 준학술적 기관으로서 제 2 조에 명시된 협회 목적을 장려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비차별적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 (2) 제 1 항에 명시된 인(人)과 기관 중 (독일 이외의) 해외에 소재할 경우, 독일 소재의 신탁인을 통해서만 설립자와 회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인은 직접명의로 회원이 되지만, 제 3 자(위탁자)의 지시에 따른다. 회원가입의 조건은 위탁당사자가 설립자 내지는 회원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자는 협회와 직접적 법적 관계가 없다.
- (3) 본 협회는 표결권이 있는 정회원과 표결권이 없는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에 비해 후원회원의 권리는 한정되어 있다.
- (4) 회원 및 비회원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임원진의 신청에 의하여 회원총회에서 유효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명예회원으로 당선되고 본인이 수락할 경우, 당사자는 정회원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 (5) 회원은 협회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가진다. 협회 사업활동 적극 참여 및 협회 홍보활동의 지원이 이에 포함된다.
- (6)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회원총회 참여권
  - 표결권 행사
  - 협회 로고를 사용할 권리
  - 협회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 협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링크를 올릴 권리
  -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협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자문위원 선출 및 피선출권
- (7)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회원총회 참여권 (표결권 없이)

- 협회 로고를 사용할 권리
- 협회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 협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링크를 올릴 권리
-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협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자문위원 피선출권

(8) 입회는 서류신청에 따라 임원회의가 결정한다. 임원회의 근거를 포함한 부정적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부정적 결정문을 접수하고 한 달 이내에 임원회에 서류접수되어야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차기 회원총회에서 결정된다.

## § 4 회비, 정보보호

(1) 본 협회의 운영은 회비, 프로젝트 및 행사 수입, 재정지원과 기타 수입 및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회비의 금액과 납부기한은 임원진의 제안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가입규정으로 결정된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2) 본 협회에 가입할 때, 신회원의 이름, 주소, 은행계좌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나이와 직업을 기록한다. 해당 정보는 본 협회 전산시스템에 저장된다. 각 회원은 고유의 회원번호를 부여받는다. 임원진은 개인정보는 회원관리에 필요한 차원에서만 활용되고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통해서 제 3자로부터 보호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임원진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DSGVO) 및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임원진은 필요에 따라 회원들의 자발적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다. 소수민 권리 행사를 위해서 회원목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임원진은 그런 회원목록을 사본으로 제출하되,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 받은 후에 그렇게 한다.

본 협회에 가입하면서 모든 회원은 온라인 및 인쇄매체에 본 협회의 회원가입 사실을 이름을 언급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관과 별도로 임원회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한다.

## § 5 탈퇴 및 제명

- (1) 자연인의 경우 자진 탈퇴, 제명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본 협회 가입이 종결된다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 자진 탈퇴, 제명 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본 협회의 가입이 종결된다.
- (2) 임원진에게 서면으로 탈퇴희망서를 제출하면 자진탈퇴할 수 있다. 역년 연말 3개월전까지 탈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 가입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 (3)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은 협회로부터 제명될 수 있다. 중요한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서면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비 납부 만기일을 3개월 초과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b. 본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 c. 회원의 자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자산 부족을 이유로 파산절차가 중단되었을 경우,
  - d. 그 외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4) 제명은 정회원의 신청 또는 임원회원의 신청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종 제명 결의에 앞서, 해당회원에게 적절한 기한을 제공하고 임원회의에 구두 또는 서면 해명할 기회를 준다. 해당 회원이 서면으로 해명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제명 결의는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해당회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5) 임원회의 제명결의에 대해 해당회원은 회원총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할 경우, 제명절차는 일단 연기된다. 항소는 제명통보를 접수하고 1달 이내에 서면으로 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항소를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임원회는 2달 이내에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항소에 대한 결의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제명 결의는 무효화된다.

회원이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항소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명결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해당회원의 협회가입은 종결된다.

## § 6 협회의 조직기관

협회의 조직기관은 다음과 같다:

- 회원 총회,
- 임원회의
- 경영이사
- 감독위원회 및 기술 전문위원회

## § 7 회원 총회

(1) 회원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회원 총회는 다음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임원, 감독위원회 및 기술 전문위원회의 선출,
- 사업 및 회계보고 발표 후 임원업무에 대한 승인,
- 회계감사 선출,
- 본 협회 정관의 변경,
- 회비 규정의 회비 금액 결정,
- 본 협회의 사업과 주요 업무의 원칙 결정.

회비 규정의 내용과 변경은 회원총회에서 유효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회원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소집한다. 임원회는 회원 총회 소집을 2주전 서면으로 또는 회원이 동의했을 경우 이메일로 사전 통보하며, 이 때 회의 안건이 함께 통보된다. 사전 통보 기한은 총회 소집 초대장을 우편 발송한 다음 날 또는 이메일 전송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최종 우편주소 또는 이메일주소를 수신자로 했을 경우, 회원이 초대장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의 의안은 임원회가 결정한다.

- (4) 총회 전날 기준으로 1 주전까지 회원들은 서면으로 회의 의안에 사항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총회 의장은 총회를 시작하면서 해당 사항을 회의 의안에 추가해야 한다.
- (5) 임원회는 언제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유를 명시하고 회원 20%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임원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의무가진다.
- (6) 회원 총회의 의장은 임원 회장 또는 회장이 부재할 경우, 부회장이 맡는다. 임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단순 다수로 출석 회원 중 의장을 맡을 회원을 선출한다.
- (7) 총회 의장의 사전 통보와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의 사전 동의 하에, 회원총회는 화상회의로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다.
- (8) 총회 개최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표결권을 가진다. 회원 당 투표권은 하나이다. 법인 또는 기타 단체, 협회 또는 기관은 해당 대변인이 대표한다. 각 정회원은 자연인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탁하여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임권은 해당 총회에만 적용될 수 있다.
- (9) 회원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 출석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개최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임원회는 4 주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제 2 차 회원 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2 차 총회는 출석 회원의 수와는 상관 없이 의결권을 가진다. 회원총회 소집통보에는 이 안내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10)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원 총회 의결은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로 의결한다. 기권표는 무효처리된다. 정관의 변경은 유효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다
- (11) 회원총회마다 총회의장이 서명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총회 장소와 일시, 회의의장 성명, 회의록 작성자 성명, 회원 출석수, 회의 안건, 개별 의결 결과 그리고 의결 방법. 정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글자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화상회의의 경우, 회원총회의 모든 참석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회의록을 회의 녹화로 보충한다.

## § 8 임원회

- (1) 본 협회의 임원회는 회장과 최소 1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는 최대 4명까지 증원될 수 있다. 본 협회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서 임원회는 제 3국, 특히 한국 출신일 수도 있다. 임원회 구성원 협회회원인 것이 선호되지만, 그 것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 (2) 임원회 구성원 단독이 본 협회를 사법적 및 사법외적으로 대리한다. 임원회는 본 협회의 정관 및 회원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사업기획외 10,000유로 이상의 법적거래는 임원 2명 또는 임원 1명과 경영이사 1명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3) 임원회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의한다. 법적 또는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 임원회를 개최야 한다. 임원회 의결정족수는 임원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회원총회에서 임원 전체를 후보 그룹으로 선출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선출된 임원은 구성원 중 회장 1명과 부회장 또는 대리인 최소 1명을 선출한다.
- (5)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의에서 다음 임원선거까지의 후임자를 선출한다.
- (6) 임원회의 구성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회는 최소 2명 최대 6명으로 구성한다. 1회 투표 결과 그 어느 후보도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가장 많이 득표한 2명의 후보간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 가부동수인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7) 임원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기록되고 의장이 서명해야 한다. 의결기록에는 임원회의 시간과 장소, 출석 임원 성명, 채택된 결의 그리고 투표결과가 기재된다. 모든 임원들이 결의할 규정에 동의할 경우, 이메일로도 서면을 통한 임원결의가 가능하다.
- (8) 회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개별 임원이 독일민법 제 181 조에 따른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 9 경영이사

- (1) 본 협회의 사업은 경영이사진이 담당할 수도 있다. 업무분야별 분업이 이루어진다. 행정업무는 행정 대표이사, 네트워크 관리는 총괄기획팀이 담당한다.
- (2) 임원회의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대표이사는 임원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 (3) 경영진은 최소한 1 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된다. 업무 규모에 따라 경영진은 추가 이사 또는 직원으로 증원될 수 있다.
- (4) 경영진과의 고용계약(보수계약/자문계약)은 최소한 2 명의 임원이 서명체결한다.
- (5) 경영진의 주요 업무는 협회 자산의 보존, 협회의 금전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산안의 작성 및 지속적 감사, 상법/조세법/민법 준수 보장, 임원에게 보고 그리고 회원들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이다.
- 
- (6) 운영진 선임의 대안으로, 운영진의 운영 활동과 네트워크 지원 및 협력 관리 업무를 대행 계약을 통해 적합한 기관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 (7) 대행사 계약은 최소 2 명의 임원회의 구성원이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8) 총괄기획팀의 주요업무는 특히 회원관리, 공동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 협력강화 지원사업, 공동기획 지원 및 대외홍보이다.
- (9) 각 경영진 구성원은 임원회의 다수결의로 업무 분야별 협회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 (10) 경영진 구성원의 해임을 위해서는 임원회의 절대다수 결의가 필요하다.
- (11) 운영진의 운영 활동 수행과 네트워크 감독 및 협력 관리를 위한 대행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임원회의 구성원 전원의 절대다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 § 10 자문 및 기술전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중요한 협회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임원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문위는 협회회원 및 정치경제계와의 소통을 장려한다.
- (2) 자문위와 별도로 협회에서는 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회에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사전계획하도록 할 수 있다.
- (3) 자문위와 기술전문위는 각기 최소 2 명으로 구성되며, 회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임기는 3 년이며, 자문위원/기술전문위원 연임이 가능하다.
- (4) 자문위원과 기술전문위원의 선출은 회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위원은 개별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 § 11 협회회원과의 거래 및 서비스제공, 저작권, 비밀유지

- (1) 회원이 협회를 위해서 유료 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 이행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협회에게 제 3 자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해당 회원의 보고 및 입증 의무는 협회에게 전가될 수 없다.
- (2) 협회와 회원간의 용역 관계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다. 협회에게 회원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과 그 중 특히 계약법상의 책임이 적용된다.
- (3) 별도의 보수를 받고 협회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은 협회에 결과물에 대한 무한정 사용권(저작권)을 양도한다. 개별 사항은 개별 용역을 대상으로 계약에서 정한다.
- (4) 회원들은 협회 내부사안에 대해 대외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타 회원과 협회의 기술적 사업상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협회 가입기간 동안과 협회 탈퇴 후에도 유지한다. 단, 제 3 자 투자자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기타 해당 고지의무는 제외된다.

## § 12 협회 자산의 사용

협회의 자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 § 13 결산, 회계감사

- (1) 협회는 회계장부 부기의 의무를 가진다. 각 회계년도마다 연말 9개월 이내에 연말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회는 회계사에게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말결산의 승인은 회원총회에서 한다.
- (2) 재적회원의 1/4 이 신청하면 회계감사의 별도 검토 받는다. 검토된 연말결산이 제출된 연말결산과 차이가 없거나 미세한 차이만 있을 경우, 연말결산의 검토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다.
- (3) 회계장부의 검토를 포함한 회계감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 회원총회에서 해당 회계년도를 담당할 회계감사원 1 명이 선출된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14 소재지 이전

협회에 유익할 경우, 임원회는 회원총회의 동의하에 본 협회의 소재지를 독일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 § 15 협회의 해산

- (1)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다. 출석 정회원 2/3 찬성으로 해산한다. 협회 총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을 때, 임원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 청산인이 된다.
- (2) 협회가 해산될 경우, 협회의 부채 청산 후 잔여재산의 활용은 회원총회에서 결의한다.

## § 16 집행지와 재판관할권

본 협회와 회원 그리고 제 3 자간의 모든 권리에 대한 집행지와 재판관할권은 협회의 소재지에 있다.

## § 17 부칙

본 정관 중 전체 항목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정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 부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효력을 상실한 조항이나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항을 대체 또는 삽입해야 한다. 이 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들의 의도 또는 정관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한다. 이는 효력 상실 대상 조항이 정관에서 정하는 용역 규모나 기한에 해당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시 의도했던 용역 규모나 기한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결정한다.

